

광주 첫 파키스탄 가족 난민 인정

반정부시위 전적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파키스탄 출신 가족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 가족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난민 인정을 한 사례도 전혀 없었고 광주 법원이 난민 신청 사건을 받아들인 것도 전무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이 때문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연맹의 광주지부(민변) 등도 향후 대응 방향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출입국사무소는 광주고법의 난민 인정 판결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난민 인정, 광주 법원 첫 사례=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A씨 가족 등 4명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에 처해 있다"며 A씨에 대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파키스탄 상황이 현저히 바뀌어 A씨 가족들에 대한 박해 가능성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또 가족 결합 원칙에 따라 부인과 2명의 자녀들에게도 난민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파키스탄 정권의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와 난민 신청을 했다. 그는 파키스탄에서 반정부시위를 주도하는 특정 정당 지역책임자로 재정적 지원 활동을 펼친 점 등으로 같은 해 3월 파키스탄 경찰에게 납치, 고문당해 89일간 입원했다. 이후 파키스탄 테러방지 특별법원은 2015년 4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당 활동을 그만두라는 협박 편지·전화와 신체적 위협을 받았고 경찰이 직접 찾아와 위협하는가 하면, 비슷한 활동을 하다 체포된 사람들이 수십년의 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이같은 점 등으로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망명했고 부인도 이듬해 아들을 데

반정부시위 주도 정당 책임자 정부 박해 피해 가족과 한국형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버텨 민변 광주지부 소송 지원

법원 "귀국 땀 박해 받을 가능성" 1심 기각→광주고법 2심서 인정 불허한 광주출입국사무소 당혹

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16년 7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게 된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허 판단을 내렸다. 이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낸 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2018년 둘째가 태어났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만큼은 난민신청자 신분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법무부도 이의신청을 기각, 이들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법원도 "A씨 주장을 믿기 어렵고 파키스탄 사법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해를 받을 것으로 인정할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의 난민 인정 신청을 불허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감금, 고문, 피신, 체포영장 발부 및 출국 경위 등과 관련된 A씨 주장은 당시 파키스탄 사회·정치적 상황에 비춰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박해를 상황에 대한 진술은 믿을만하다는 것이다.

A씨가 파키스탄으로 송환될 경우 곧바로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파키스탄 테러방지특별법원이 최근 소수정당 대표의 체포를 둘러싸고 빚어진 경찰에 대한 폭력 및 시위 등의 혐의로 정당 지지자 86명에 대해 각 징역 55년을 선고한 점을 감안하면 A씨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

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죽음 피해 온 한국,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 꿈은 앞에= '난민신청자'인 이들의 한국 생활도 호락하지 않다.

이들은 난민 신청으로 임시비자(G-1)중 난민신청자에게 주는 비자(G-1-5)를 받고 광주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당장, 한국에서 생활할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 난민신청을 하면 적십자에서 지원해주는 300여만원을 보증금으로 집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보증금이 나눠서 지급되는 바람에 숙소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

급하게 도망치듯 떠난 터라 파키스탄에서 조금 가져온 돈도 다 썼고 아르바이트로 가족 생계를 유지해야 했지만 '난민' 신분으로 할 일은 1-3개월짜리 단순노동이 전부였다. 화훼농장 등에서 해본적 없는 막노동에 온 몸이 아파도 병원 갈 돈도 없었다고 했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어 최근에는 수입 없이 하루하루 버텨왔다는 게 소송을 지원한 민변측 얘기다.

이들은 특히 3개월마다 '난민 인정 소송 진행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느라 힘들어했다는 게 변호인측 설명이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지난 2018년부터 3개월마다 비자 갱신비(1인당 6-8만원)를 마련해야 하는데, 자칫 본국으로 쫓겨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견뎌야 했다. A씨 변호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도 얼마나 비자를 연장해야 할지 몰라 악을 살 돈도 아꼈다"고 말했다.

민변 광주지부도 이같은 점을 들어 이들 소송을 지원하고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소송인제도와 송달료 등을 지원하는 등 이들 가족과 함께했다.

이들 소송을 맡은 김민희 변호사는 "광주에서 난민이 인정된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면서 "난민인정자로 확정되면 비자 변경부터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들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재건축·재개발 불법 속출

'업체선정 비리' 지산 1구역 11명 입건...학동 4구역 조합장 등 포함

광주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현장 내 불법 행위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산 1구역 재개발사업에서도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공무원이 입건됐다. 북구청의 고발로 운암 3단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면서 경찰 수사가 광주 전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에서는 17일 동구 지산 1구역 재개발사업 내 부동산 투기와 관련, 부동산실명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11명 중에는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그의 아들,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재개발사업을 앞두고 다세대주택을 구입, 건물 쪼개기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한 뒤 향후 분양권을 확보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분양권을 세대별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북부경찰도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한 북구청의 고발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북구는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해체계획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 혐의(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과 하도급 업체인 무안환경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특히 운암 3단지 철거공사 하청업체인 무안환경의 경우 경기도 포천에 위치, 중장비를 광주까지 가져오기 힘들다는 점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역 건설업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참사 공사를 맡았던 굴착기 기사(왼쪽)와 현장관리자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난민 인정률 0.8%...심사 기간엔 '고통의 삶'

지난해 국내 난민 인정률은 0.8%다.

17일 법무부가 집계한 난민 인정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을 한 6684명의 외국인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55명에 불과했다. 심사 완료된 것만 집계한 것으로, 그나마 난민 인정률도 낮아지는 추세다.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내놓은 최근 5년 간 난민 인정자 통계를 파악한 결과,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인 ▲2016년 98명(7541명 신청·인정률 1.2%) ▲2017년

121명(9942명 신청· 1.2%) ▲2018년 1만 6173명(144명 신청· 0.8%) ▲2019년 71명(1만5451명 신청· 0.4%) ▲2020년 55명(6684명 신청·0.8%)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799명이 전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4.8%)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엄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만하다.

난민 신청자는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한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난민법(2013년) 시행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정률은 낮다는 점에서 인권 보호 측면에서 난민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심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지난 10일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광주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A씨의 경우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 부담해야 할 비자 갱신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도 가지 못하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백슬건설 대표·한솔기업 현장소장 구속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사고 당일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했던 백슬건설 대표 A(47)씨와 현장소장인 한솔기업 관계자 B(28)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중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신청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 17명의 사상

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동 4 재개발구역 내 일일건축물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은 한솔기업으로부터 사고현장 건물 철거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백슬건설 대표다.

경찰은 한솔기업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아 백슬건설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감리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